

《 檢 討 報 告 書 》

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.

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
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.

- **본 조례 개정안은** 저소득자에 대한 빈곤감을 느끼게 하는 영세민이라는 부적절한 문구를 삭제하고, 용자금의 상환기한 연장기간을 1년 이내 1회에서 1년 이내 2회로 연장하는 것으로서,
- **개정안 제3조제2항, 영세민 용어 삭제 안은** 영세민이라는 용어가 계층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있어 오래전부터 저소득 주민이라는 용어로 대체 사용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당연한 입법조치로 판단되나,
- **개정안 제9조제2항, 상환기간 연장횟수 변경안은** 서울시 자치구중 성동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구가 1회 연장을 규정하고 있으며, 2005년도의 경우 연장 신청한 사례가 없었으므로 불필요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. 다만, 동 조문의 “1년 이내로 하되 1회”는 연장기간이 불명확하여 해석의 오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“제②항의 연장기간은 1년의 기간으로 1회에 한한다”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2006. 2. 20

보고자 : 김 찬 재